

등록협약의 우주법상 의의와 미래과제에 관한 연구

김한택*

목 차

- I. 서언
- II. 등록협약의 주요내용과 우주법적 의의
- III. 등록협약의 미래과제
- IV. 결론

* 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 htkim@kangwon.ac.kr).

I. 서언

물체의 법적지위는 그 등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주활동에서 첫 번째로 밝혀져야 할 사항은 우주에 누가 쏘아올린 어떠한 물체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우주물체등록은 우주활동에서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¹⁾ 1967년 우주법의 대헌장(*Magna Carta*)적인 “우주조약”(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²⁾ 제5조에서 조약 당사국은 우주비행사가 조난을 당한 경우 우주선의 등록국(State of registry)에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송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등록국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제8조에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은 동 물체가 외기권 또는 천체에 있는 동안, 동 물체 및 동 물체의 사람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은 우주물체의 법적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그 우주물체의 속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국적(nationality)의 지위와 비교되는 특별한 관계이다.³⁾ 그러나 이 조항은 의무성을 가진 조항은 아니며, 등록에 관한 정보도 국내등록 뿐만 아니라 유엔등록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⁴⁾

1974년 5월 28일에 유엔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산하 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는 등록에 관한 조약초안을 채택하였는데, 1974년 11월 12일에 결의 3235(X X V X)로 유엔총회에서 승인되었다. 마침내 일명 ‘등록협약’(Registration Convention)이라고 불리는 “외기권 우주에 발사한 물체의 등록

1) C. Wilfred Jenks, *Space Law*, Stevens, London, 1965, pp. 221-222.

2) UNGA Resolution 2222 (XXI), 이 협약은 1967년 1월 27일 체결되었고, 1967년 10월 10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610 UNTS 205; TIAS 6347; 18 UST 2410; UKTS 1968. No. 10; Cmnd. 3198; ATS 1967 No. 24; 6 ILM 386 (1967).

3) John Kish, *The Law of International Spaces*, Sijthoff Leiden, 1973, p. 43; E. R. C. van Bogaert, *Aspects of Space Law*,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6, p. 115.

4)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 · Oxford, 1997, p. 484.

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이 1975년 1월 14일 체결되어, 1976년 9월 15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⁵⁾

현재 세계는 우주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주가 점차 인간과 매우 가깝게 느껴지고, 우주관광이 시작될 정도로 우주의 상업화와 민영화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미국은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CSLCA)을, 2017년 룩셈부르크는 “우주자원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Law on the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⁶⁾을, 그리고 2018년 영국은 우주산업법(Space Industry Act; SIA)을 각각 제정하였는데, 이들 국가들은 국내우주법 제정을 통해 민간우주산업을 촉진시켜 우주로 향하고 있다. 한편 2019년 11월 11일 일론 머스크(Elon Reeve Musk)가 이끄는 미국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SpaceX)가 우주인터넷 ‘스타링크’(Starlink)구축을 위한 소형 인공위성 60기를 추가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2019년 5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스타링크 군집위성 발사인데, 이로써 지구 저궤도에 올라간 스타링크 위성은 총 180기가 되었다. 스페이스X는 2020년대 중반까지 스타링크 위성 총 1만 2,000기를 순차적으로 쏘아 올린 뒤 향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위성 수를 최대 4만 20,00기까지 확대해 전 세계 어디든 사각지대가 없는 광대역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이다.⁷⁾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연구는 그 어느 시기보다

5) UNGA Resolution 3235(XXIX), 12 November 1974; 1023 UNTS 15; TIAS 8480; 28 UST 695; UKTS 1978 No. 70; Cmnd. 6256; ATS 1986 No. 5; 14 ILM 43 (1975); Sushma Malik,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9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69, p. 412; C. Dalfen, Toward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the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The Gestation Process, 9 *The Ca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71, p. 252.

6) 2015년 미국의 CSLCA와 2017년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에 관하여 Han Taek, Kim,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A Recent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11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Spring 2018, pp. 38-39 참조.

7) 스타링크를 구성하는 각 위성의 크기는 0.7m×0.7m×1m, 무게는 227kg 수준으로 한국 통신위성 ‘무궁화 7호’(3.6t)의 약 15분의 1 수준이다. 위성 크기가 작은 만큼 제작과 발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상공 350-550km 수준으로 지상에 더 가까이 띄워 통신 감도와 속도 등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스타링크를 통해 신호가 잘 끊기는 농촌 지역이나 유선(광섬유) 인터넷망이 닿지 못하는 도서 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위성 60기 추가 발사...우주인터넷 위성 180기로, 매일경제, 2020.01.07.).

도 중요하다. 이 논문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등록협약의 주요내용과 우주법적 의의를 고찰하고, 냉전시절 제정된 동 협약이 과거보다 우주과학기술의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현 시대에도 여전히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등록협약에 미비한 점과 이와 관련하여 개정이나 추가의정서 채택의 필요성 여부와 어떠한 내용들이 추가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연구한다. 등록협약이 체결된 지 45년이 지났음에도 이 협약에 관한 연구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다른 우주관련조약들인 “책임협약”(우주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⁸⁾ “달협정”(달과 다른 천체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협정;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⁹⁾에 비하면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구조협정”(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 및 우주공간에 발사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¹⁰⁾과 함께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주제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II. 등록협약의 주요내용과 우주법적 의의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조약의 필요성은 우선 안전(security)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우주로 발사되는 우주물체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장래에 특정의 궤도가 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특히 지구정지궤도(Geostationary

8) UNGA Resolution 2777(XXVI), 이 협약은 1972년 3월 29일 체결되었고 1972년 9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961 UNTS 187; TIAS 7762; 24 UST 2389; UKTS 1974 No. 16; Crmnd. 5068; ATS 1975 No. 5; 10 ILM 965 (1971).

9) UNGA Resolution 34/681, 1979년 12월 5일 채택되고 1984년 7월 11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1363 UNTS. 3; 18 ILM 1434 (1979).

10) UNGA Resolution 2345(XXII), 이 협약은 1968년 4월 22일 체결되었고, 1968년 12월 3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19 UST 7570; 672 UNTS 119; 구조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김한택, 구조협정의 주요내용과 우주법상의 의의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2019, pp. 213-238 참조.

Orbit)에 관해서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하였다. 이렇게 우주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우주공간의 일정 지역에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위성을 발사할 때 상호 조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점차 많은 양의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이 존재하면서 이것들이 우주물체와 충돌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일 우주비행사가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우주물체가 미리 식별되고 우주공간에서 그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구조대가 우주비행사에 대한 원조 및 구조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등록협약은 ‘구조협정’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사실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조약이 구조협정보다 먼저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협약은 구조협정 보다 7년이나 뒤에 제정되었다. 우주물체의 등록은 또한 특히 우주물체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발사기관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등록협약은 ‘책임협약’의 제 규정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유용한 조약이다.¹¹⁾ 등록협약은 책임협약보다 3년이나 뒤에 제정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미 COPUOS 임시위원회(*ad hoc*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시절에도 우주물체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식별 방법을 준비하고 우주공간에서 그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침내 유엔총회는 호주, 캐나다, 이태리, 미국에 의해서 제안된 1961년 12월 20일 결의 1721(XV I)¹²⁾를 통하여 우주물체 발사의 공식적 등록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COPUOS와 유엔사무총장에게 준비하도록 권고하였다.¹³⁾ 그러나 유엔총회의 권고는 국가들에게 정보내용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고, 이 문제에 관한 어떠한 의무사항도 제시하지 못했다.¹⁴⁾

11) Jenks, *op. cit.*, pp. 219-224; N. Mateesco Matte,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I *Annals of Air and Space Law*, 1976, p. 232; A. A. Cocca,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in I *Manual on Space Law* (eds. N. Jasentuliyana & Roy S. K. Lee), Oceana Publications, 1979, p. 173.

12)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RES/1721 (XVI)(20 December 1961).

13)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Sixteenth Session, Supplement No. 17 (A/5100), vol. 1, p. 6; Matte, *op. cit.*, p. 233.

14) I. H. Ph. Diederiks-Verschuur & V. Kopal,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3rd revised ed., Wolster Kluwer, 2008, p. 44.

결국 발사국의 보고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므로 유엔에의 등록도 동 결의에 의해서 언급되지 않았고 따라서 발사국에 의해서 전달되는 정보 역시 일관되지 못했다. A. A. Cocca 교수는 COPUOS의 법률소위원회나 작업그룹(Working Group)이 동 결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한 것은 마치 로마법 상 “*Ubi Lex Non Distinguit, Nec Nos Distinguere Debemus*”(법이 구별하지 않으면, 해석자도 구별해서는 안된다) 원칙과 부합한다며 이것의 명확성에 대하여 비난한 바 있다.¹⁵⁾ 우주법상 국제관습법으로 여겨지는 ‘우주법 선언’(Space Law Declaration)으로 불리는 1963년 유엔결의 1962(XV III)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을 위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법원칙선언”¹⁶⁾도 제7항에서 국가등록의 개념을 인정하였지만 그것에 관한 국가적 의무는 선언하지 않았다.

우주물체의 발사에 관한 의무적 등록에 관한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주로 군사적 목적의 위성발사로부터 발생했다. 최초로 인용된 1961년의 유엔결의 1721(XV I)도 군사위성과 평화목적만으로 사용된 우주물체를 구별을 하지 않았다.¹⁷⁾ 우주강대국은 이 문제에 관해서 국제적인 의무절차의 확립에는 소극적이었고 유엔사무국에 제공된 정보도 완전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¹⁸⁾ 마침내 1974년 5월 28일에 COPUOS 법률소위원회는 조약초안을 채택하고, 1974년 11월 12일에 결의 3235(XXV X)에 의해 총회에서 승인된 ‘등록협약’이 채택되었다. 유엔 우주업무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UNOOSA)¹⁹⁾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우주공간에 발사되어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은 4,987기인데, 이 중에서 1,957가 작동 중인데 전체 위성 중 40% 미만이다.²⁰⁾ 다시 말하면 우주공간에 있는 60%이상의 위성들이 작동도 못하면서 지

15) A. A. Cocca, *op. cit.*, p. 175, 184.

16)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17) I. H. Pf. Diederiks-Verschuur, Registration of Spacecraft, *New Frontiers in Space Law* (eds. Edward McWhinney & Martin A. Bradley), 1969, p. 125 *et seq.*

18) van Bogaert, *op. cit.*, pp. 116-117.

19) UNOOSA는 1958년 12월 13일 유엔총회 결의 1348 (XIII)를 통하여 COPUOS를 돕도록 유엔사무국의 소규모 전문가 그룹으로 창설되었다(<https://www.unoosa.org/>).

20) How many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in 2019 ?, *Pixalytics*, 16 January 2019 (<https://www.pixalytics.com/satellites-orbiting-earth-2019/>).

구체도를 들고 있는 셈이다.

등록협약은 그 목적을 조약 전문에서 밝히고 있다. 조약은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의무적 규칙을 설정하는 것을 의도하였으며, 유엔에 의한 중앙등록제(central register)를 확립하고 우주물체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등록협약은 제1조에 ‘발사국’(launching state)의 개념을 우주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를 구매한 국가(State which launches or procures the launching of a space object)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그 국가의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우주물체가 발사되는 국가뿐 아니라 발사를 위해서 시설을 제공하는 국가도 포함하고 있다.²¹⁾ 따라서 발사국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발사에 대해서 지배적인 역할을 가지는 모든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협약 제1조에 규정된 발사국의 정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²²⁾ 발사국의 정의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주조약과 책임협약 상 국가활동의 국제책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등록협약은 제1조에서 ‘우주물체’(space object)란 “우주물체의 복합 부품과 동 발사 운반체 및 그 부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협약 제1조에 명시된 우주물체의 정의와 동일하다. 그리고 ‘등록국’에 관하여는 우주물체 등록을 한 발사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는 협약이 등록국을 발사국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국가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2조에서도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등록국이란 표현은 우주조약을 포함한 우주관련 조약 중에서 오로지 등록협약에서만 사용되고 있다.²³⁾

등록협약 제2조는 두 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발사국의 등록 시 의무사항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사국은 ‘지구궤도 또는 그 이원’(earth orbit or beyond)에 발사된 모든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협약은 발사시도(attempted launching)된 우주

21) Bin Cheng, Article VI of the 1967 Space Treaty Revisite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National Activities”, and “The Appropriate State”, 26 *Journal of Space Law*, 1998, p. 21.

22) Frans von der Dunk with Fabio Tronchetti (eds.), *Handbook of Space Law*, Edward Elga Publishing, 2015.

23) Zhao Yun, Revisiting the 1975 Registration Convention: Time for Revision? (이하 Registration Convention로 약칭), 11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4, pp. 109, 117-118.

물체는 포함하지 않고 지구궤도 또는 그 이원, 또는 달과 다른 천체나 우주공간 멀리 탐사하는 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주공간을 잠시 지나는 물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²⁴⁾ 또한 등록은 적절한 등록부에 기입(entry)이라는 방법으로 실행된다. 발사국은 그러한 등록부를 보관할 의무를 진다. 또한 발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그와 같은 등록부의 확정을 통보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제2조 1항). 본 항은 발사국이 등록국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등록국에게 3개의 의무사항이 부과되어 있다. 즉, 등록국은 등록부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며, 발사된 모든 우주물체는 등록되어야 하고 유엔사무총장에게 등록부의 확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들은 발사국이 등록절차에 대하여 우월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발사를 하는 국가, 발사시설을 제공하는 국가 및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발사가 실행되는 국가가 발사국이지만 실제로 자국의 영역에서 발사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등록에 관해서 결정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²⁵⁾

이러한 지위는 동 조의 다른 항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개별의 등록 내용 및 그 보관의 요건은 관련 등록국에 의해서 결정된다. 등록국의 이러한 자유는 그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확인이다. 당해국은 우주물체를 등록하기 위한 전제조건·방식·요건을 그 국가의 국내입법에 따라서 전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위임받고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적용규칙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는 해양법 및 항공법에 있어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²⁶⁾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²⁷⁾ 제91조 1항은 선박의 국적에 관하여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국적의 부여, 자국영토에서의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고, 일정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은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며, 그 국가와 선박 간에는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는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한

24) A. A. Cocca, *op. cit.*, p. 181.

25) Stephen Gorove, *Studies in Space Law; its Challenges and Prospects*, Leyden/Sijthoff, 1977, p. 13.

26) van Bogaert, *op. cit.*, p. 119.

27) 원래 명칭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으로 1982년 12월 10일 채택되고, 1994년 12월 10일 발효되었다; 1833 UNTS 397, 21 ILM 1261 (1982).

선박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서류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1조 2항). 한편 “1944년 시카고협약”으로 불리는 “국제민간항공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²⁸⁾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항공기는 등록국의 국적을 보유하며, 항공기는 한 개 이상의 국가에 유효하게 등록할 수 없다. 단, 그 등록은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9조에 체약국에 있어서 항공기의 등록 또는 등록의 변경은 그 국가의 법률과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에 관한 국내법을 인정하고 있다.²⁹⁾ 이와 유사한 권리가 등록협약을 통하여 우주법 분야에서 등록국에게 인정된 것이다.³⁰⁾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수송수단이 가지는 관할권을 ‘준영토관할권’(quasi-territorial jurisdiction)이라고 하는데, 준영토관할권은 국가가 자국의 선박, 항공기, 우주선 등의 수송수단에 대하여 행사하는 관할권으로 수송수단은 소유권, 국적, 등록 또 다른 인정된 관련성을 통하여 관계국가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야 하며,³¹⁾ 선박이나, 항공기, 우주선이 국내법에 등록된 경우 이들이 바다, 대기 또는 우주에서 활동할 때에는 마치 등록국가가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³²⁾

발사가 둘 이상의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어느 특정 국가가 대표로 지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공동등록(joint registration)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³³⁾ 따라서 관계국들은 어느 국가가 당해우주물체의 등록을 할 것인가를 함께

28) 동 협약은 1944년 12월 7일 채택되고, 1947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1994) 15 UNTS 295.

29) Bin Cheng, *The Law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Stevens, 1962, p. 129.

30) van Bogaert, *op. cit.*, p. 119.

31)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op. cit.*, p. 73; Bin Cheng, the Extra-terrestri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18 *Current Legal Problems*, 1965, pp. 135-136; Bin Cheng 교수는 국제법상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의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위에 언급한 ‘준영토관할권’(quasi-territorial jurisdiction) 외에 ‘영토관할권’(territorial jurisdiction)은 국가가 그 영토 내에서 행사하는 권력의 총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영토주권에서 유래하나 위임통치, 신탁통치 또는 조차지의 경우에는 조약에서 유래한다고 하며, ‘인적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은 국가의 국민이나 법인체 또는 기업체가 어느 곳에서나 국적을 소유하고 그 보호를 향유하거나 또는 국가에 충성을 맺고 있는 관계에 있을 때 이에 대하여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김한택, *우주법*, 와이북스, 2016, pp. 31-32.

32) G. Schwarzenberger, *Manual of International Law*, Stevens & Sons Ltd, 1952, p. 60; Gbenga Oduntan,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the Airspace and Outer Space-Legal Criteria for Spatial Delimitation*, Routledge, 2011, p. 36.

결정해야 한다.³⁴⁾ 그러므로 등록협약 제2조 2항에서 이러한 국가들은 우주물체 및 그 승원(personnel)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의 권한에 관해서 적절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들이 자유롭게 협상할 협정의 대상으로는 기술적 혹은 재정적인 의무 및 부담의 분배 및 등록국의 국적을 갖지 않는 승원의 특별한 지위 등에 관한 것들이 있다. 한편 우주조약 제5조에서 ‘우주비행사’(astronaut)를 ‘인류의 사절’(envoy of mankind)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구조협정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서 우주비행사라는 표현보다는 ‘우주승원’(space personnel)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협약도 승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발전적이다. 사실 우주비행사는 아니지만 우주활동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우주선에 승선하여 우주탐사 및 기타 우주활동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우주에서의 임무를 위한 우주공학자 및 우주과학자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관계국은 이렇게 특별협정의 규정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등록국가의 권한과 책임은 등록협약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³⁶⁾ 등록협약 제2조 3항에 의하면 각 등록의 내용 및 그것이 유지되는 조건은 관련 등록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는 국내법을 통해 국가 등록부에 기록이 시작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요구 사항, 절차, 면허절차, 제공할 정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지만 국제등록에 필요한 요구 사항과 유사하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협약 제3조 및 제4조는 국제등록에 관한 것인데, 이 조항들은 임의의 정보제공을 의무적인 규칙에 의하여 제공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은 등록국이 등록협약의 규정 제3조 1항에 따라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기록한 등록부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유엔사무국이 보관하는 등록부는 국제적이며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 실제로 등록협약은 이 등록부에 대한 완전하고 개방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2항). 따라서 정보가 등록이 되면 모든 국가가 이 정보를 접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록국가로 하

33)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op. cit.*, p. 469.

34) A. A. Cocca, *op. cit.*, p. 180.

35) Zhao Yun, *A Legal Regime for Space Tourism: Creating Legal Certainty in Outer Space* 74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2009, p. 978.

36) Matte, *op. cit.*, pp. 237-238.

여금 매우 신중하고,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³⁷⁾

등록협약 제4조는 정보의 의무적 성격을 규정하고 이 협약에 의해 도입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모든 등록국은 등록된 각각의 우주물체에 관해서 실무적인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정보에는 발사국의 국가명, 발사가 행해진 날짜 및 영역, 노들주기·궤도경사각·원지점·근지점 등의 기본적인 궤도요소가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주물체의 일반적 기능도 보고되어야 한다(제4조 1항). 또한 제4조 2항에서 각 등록국은 우주물체에 관한 추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등록국이 이 추가정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별 국가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등록협약은 보고국은 발사국이 아닌 등록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³⁸⁾

이 추가적 임의의 데이터 보고에 의해서 보충되는 첫 번째 의무적 정보제공의 범주와는 별도로 등록협약은 제4조 3항에서 두 번째의 강제규정을 도입하였다. 각 등록국은 지구궤도에 존재하지 않는 우주물체에 대해서도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두 번째 범주의 정보도 첫 번째 것에 뒤지지 않게 중요한 의무를 지닌다. 등록협약이 체결된 이유가 우선적으로 안전이지만 특정궤도가 장래에 포화상태가 되고, 우주물체가 충돌할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궤도에 관한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등록협약의 이 조항들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³⁹⁾

접근이 개방된 국제적 등록을 유지할 의무와 그것을 위한 정보제공의 의무는 확실하게 우주법에 있어 중요한 진보적 사항이다. 그러나 이 강제제도에는 약간의 흠결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정보의 통지시기에 관한 엄밀한 요구가 없다는 것이다. 등록협약 제4조 1항에 따르면 등록하는 데이터에 관한 정보는 유엔사무

37) Diederiks-Verschoor & Kopal, *op. cit.*, pp. 45-46.

38) A. A. Cocca, *op. cit.*, p. 182.

39) van Bogaert, *op. cit.*, p. 121.

총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as soon as practicable)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또한 제4조 3항에 지구궤도에 존재하지 않는 우주물체에 대해서도 유엔사무총장에게 ‘실행가능한 최대한도에 있어서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to the greatest extent feasible and as soon as practicable)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일시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국가에게 무한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의 무제한은 협약의 목적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어느 국가가 우주물체를 우주공간에 발사한 후 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지구로 귀환시켜 해체시켜 버렸다면 등록협약의 존재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⁴⁰⁾ 유엔의 등록은 안전이라는 목적과 더 나아가 구조 및 배상책임원칙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식별을 확실하게 실현하는 목적과 우주공간에 발사된 우주물체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⁴¹⁾ 따라서 등록협약의 개정이나 추가의정서가 만들어 질 때 정보제공에 관해서는 발사시기에 제공해야한다는 규정이 보완되면 좋을 것이고 적어도 한 달 또는 두 달 이내에는 등록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등록협약은 물론 책임협약까지 그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⁴²⁾

구조협정 제5조는 각 당사국은 관할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발견된 우주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에 대하여 발사당국 및 유엔사무총장에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물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협약 제5조는 지구를 선회하는 궤도 또는 지구를 선회하는 궤도 이원에 발사된 우주물체에 표시된 기탁자 혹은 등록번호 또는 그 양자로서 표시되었을 때 마다 그 사실을 등록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의 등록부에 이 통지를 기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³⁾ 따라서 표시를 하지 않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국가는 국제관습법 상 우주법에 부과되는 의무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40) A. A. Cocca, *op. cit.*, p. 182.

41) Gorove, *op. cit.*, p. 136; S. M. Williams, The Surprise Convention on the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28 *Zeitschrift für Luft- und Weitraumrecht*(*Germ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1979, p. 127.

42) A. A. Cocca, *op. cit.*, p. 182.

43) van Bogaert, *op. cit.*, p. 122.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⁴⁴⁾

등록협약은 제6조에 타국에 손해를 준 우주물체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창설하여 우주법 분야에서 유용한 혁신을 제공하였다. 이 규정은 그 기원을 1973년 3월 COPUOS 법률소위원회에 제출한 미국의 제안에서 찾을 수 있다. 제안서를 검토한 후 조약 초안을 준비한 작업그룹(Working Group)은 법률소위원회와 함께 이 조문을 조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등록협약 제6조는 어느 체약국이 자국 또는 자국의 자연인 혹은 법인에게 손해를 준 우주물체를 발견하여 등록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특히 우주물체의 감시 및 추적을 위한 시설을 지닌 당사국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최대한도에서 그러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우주물체가 위험 또는 해를 미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 또한 그러한 요청은 유엔사무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손해를 입은 국가는 우주물체를 식별하기 위한 원조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서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요청을 한 국가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요청을 한 사건에 관한 시간, 성질 및 상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조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약정은 관계국간의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equitable and reasonable conditions)이라는 문구로 인해 등록협약은 손해발생의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피하고 있다. 원조가 공여될 환경·형식, 조건에 대해서 관계국들은 합의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이 조항을 통해 근본적으로 국제법상 ‘형평의 원칙’(principle of equity)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⁵⁾

등록협약은 제7조에 우주활동을 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에도 이 협약이 정하는 권리 및 의무를 수용할 것을 선언하고 그 당사국의 과반수가 본 조약 및 우주조약의 당사국인 경우에 적용되고 (제7조 1항), 국제기구가 그와 같은 선언을 수락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2항). 이것은 정부간 국제기구에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준당사국(quasi-parties)의 지위를 부여한 것인데,⁴⁶⁾ 예를 들면 정부간 국제기구

44) A. A. Cocca, *op. cit.*, p. 188

45) van Bogaert, *op. cit.*, pp. 122-123.

46)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op. cit.*, p. 469.

의 경우 회원국을 대표하여 어느 한 국가가 대표를 맡게 된다. 유럽우주기구(ESA)의 경우 프랑스가, 인터코스모스(Intercosmos)의 경우 소련이 담당하였다.⁴⁷⁾ 등록협약의 규정을 정부간 국제기구에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등록협약 제7조의 내용과 유사한 규정은 이미 우주관련조약들에서도 규정화되었는데, 구조협정(제6조), 책임협약(제22조), 달협정(제16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⁴⁸⁾ 지금까지 1983년에 유럽우주기구(ESA), 1998년에 유럽기상위성탐사기구(EUMETSAT) 및 유럽통신위성기구(EUTELSAT), 2014년에 인터스푸트니크(Intersputnik) 등 4개의 정부간 국제기구가 등록협약에 가입하였다.⁴⁹⁾ 이러한 정부간 국제기구는 내부등록의 의무를 지며, 발사하는 우주물체에 관한 내용을 유엔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핵심기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간 국제기구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해서 발사된 우주물체에 대한 통제 및 관할권에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다. 우주물체가 정부간 국제기구를 위해서 발사된 경우 한 국가에 의해서 발사되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정부간 국제기구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간 국제기구가 입법권과 관할권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특히 형사문제가 결부된 사건이 다루어진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⁵⁰⁾ 이렇게 등록협약의 이러한 접근은 관할권과 통제권은 오직 등록국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발사국들은 이러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책임은 모든 발사국가에 부가되지만 관할권과 통제는 단지 등록국가에게만 부가된다고 할 수 있다.⁵¹⁾

우주조약이나 구조협정, 책임협약이 조약의 비준서 및 가입서를 미국, 영국, 소련 정부에게 기탁하는 규정을 둔 반면, 등록협약 제8조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르헨티나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47) Zhukov & Kosolov, *op. cit.*, p. 89.

48) A. A. Cocca, *op. cit.*, p. 187.

49) A/AC.105/C.2/2019/CRP.3*

(https://www.unoosa.org/oosa/oosadoc/data/documents/2019/aac.105c.22019crp/aac.105c.22019crp.3_0.html).

50) A. A. Cocca, *op. cit.*, p. 187.

51) Zhao Yun, Registration Convention, *op. cit.*, pp. 110-111.

것이고, 전례로 1973년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⁵²⁾을 들 수 있다. 또한 등록협약은 우주관련 조약상 최초로 아랍어로 작성된 원본을 지닌 조약이다.⁵³⁾

Ⅲ. 등록협약의 미래과제

등록협약 제10조에 따르면 협약의 개정문제는 협약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시, 협약의 과거 적용에 비추어 개정을 요하느냐를 고려하기 위하여 협약 심사 문제가 유엔총회의 잠정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고, 협약이 발효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협약 당사국 3분의 1의 요구에 의하여, 그리고 당사국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심사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심사에는 우주물체의 정체 확인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관련 기술적 발달도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협약의 이행이 10년이 지난 1986년, 유엔총회는 그러한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⁵⁴⁾

등록협약이 국제우주법상 등록이라는 세부주제로 성공한 조약으로 제정된 지 거의 45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의 적용가능성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등록조건의 불분명함과 미흡한 통제관리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우주조약을 비롯한 다른 우주관련조약들과 마찬가지로 등록협약도 ‘우주물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였다.⁵⁵⁾ 사실 우주에 발사된 우주선 또는 위성이 우주물체인가에 대한 합의

52) 1973년 12월 14일 채택되고 1977년 2월 20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1035 UNTS 167; 13 ILM 41, (1974).

53) Matte, *op. cit.*, pp. 240-241.

54) Michel Bourelly, Is it Necessary to Re-Negotiate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30 *Proceedings of the Colloquium of the Law of Outer Space*, 1988, p. 231.

55) Stephen Gorove, Definitional Issues Pertaining to ‘Space Object’, 37 *Proceedings of*

는 없다.⁵⁶⁾ 등록협약 제4조 3항은 각 등록국은 이전에 정보를 전달하였으나 지구 궤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관련 우주물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또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주폐기물의 경우 더욱 복잡하게 발생한다.⁵⁷⁾ 최초 발사국가는 원래 ‘작동 중인 우주물체’(functional objects)만을 관리하고 ‘비 작동 우주물체’(non-functional objects) 또는 그로인한 우주폐기물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까지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⁵⁸⁾ 등록협약은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 우주폐기물의 식별이 가능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일단 우주물체가 작동을 멈추면, 최초 발사국가는 장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⁵⁹⁾ 그리고 최초 발사국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지식과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최초 발사국가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국가들이 위성발사를 할 때 더욱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⁶⁰⁾

the Colloquium of the Law of Outer Space, 1994, p. 88; and Bin Cheng, ‘Space Objects’, ‘Astronauts’ and Related Expressions, 34 *Proceedings of the Colloquium of the Law of Outer Space*, 1991, p. 17.

- 56) Vladimir Kopal, Some Remarks on Issues Relating to Legal Definitions of ‘Space Object’, ‘Space Debris’ and ‘Astronaut’,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1994, p. 1; Karl-Heinz Bockstiegel, The Terms ‘Appropriate State’ and ‘Launching State’ in the Space Treaties: Indications of Stat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State and Private Space Activities”, 35 *Proceedings of the Colloquium of the Law of Outer Space*, 1992, p. 15.
- 57) C. D. Williams, Space: The Cluttered Frontier, 60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1995, p. 1148; A. A. Cocca, *op. cit.*, p. 180; 우주폐기물에 관하여 김한택,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2호, 2015, pp. 469-497 참조.
- 58) A. A. Cocca, *op. cit.*, p. 180; B. A. Luxenberg, “Registration on space Objects” in World Wide Space Activities Report prepared by the Sub-Committee on Space Applications of th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U.S. House of Representatives, 95th Congress, 1st sess., Sept. 1977, p. 528.
- 59) See R. C. Bird, Procedural Challeng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 of Space Debris, 40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2003, p. 644.
- 60) Zhao Yun, Registration Convention, *op. cit.*, p. 116; See Bin Cheng,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Space: The Need for New Treaties, 19 *Journal of Space Law*, 1991, p. 30; 김한택, 21세기 국제우주법의 과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8호, 2003, pp. 203-204 참조.

등록협약의 지속적인 적용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우주활동이 진행되면서 우주활동의 상업화 및 민영화로 인해 우주물체의 등록문제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주활동의 발전을 고려할 때 등록협약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할 시기이다.⁶¹⁾ 특히 ‘발사국’에 대한 등록협약 제1조의 현재 정의는 우주활동의 상업화와 민영화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02년 COPUOS의 법률소위원회의 작업 그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정부간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⁶²⁾ 특히 위성발사국이 다른 국가에게 위성을 판매할 경우 등록협약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성을 구입한 국가는 발사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책임협약에 따르면 오로지 발사국만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국가들은 ‘새로운 국가’(new State)가 양도를 받은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래의 발사국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불편하게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협약의 추가의정서나 등록협약의 개정 시에는 발사국의 범위를 새로운 국가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⁶³⁾ 한편 항공법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은 제82조에 체약국은 시카고협약이 본 협약의 조항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상호간의 모든 의무와 양해를 폐지한다는 것을 승인하고 또한 이러한 의무와 양해를 성립시키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83조에 본 협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협정은 곧바로 이사회에 등록하게 되고 이사회는 가급적 속히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80년 동 협약에 제83조 2(Art. 83 bis)를 신설하여 항공기의 임차대절 또는 상호교환이나 기타 유사한 조처에 항공기의 등록국으로부터 사용국으로의 일정한 권한 및 의무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임차항공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점을 우주법 학자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⁶⁴⁾ 한편 유엔총회는 “발사국 개념의 적용”(Application of

61) Zhao Yun, Registration Convention, *op. cit.*, p. 107.

62) Kai-Uwe Schrogl and C. Davies, A New Look at the 'Launching State': The Results of the UNCOUOS Legal Subcommittee Working Group-Review of the Concept of the 'Launching State' 2000-2002, 44 *Proceedings of the Colloquium of the Law of Outer Space*, 2002, pp. 286-301 참조.

63) Zhao Yun, Registration Convention, *op. cit.*, pp. 110-111, 118.

64)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op. cit.*, p. 482.

the concept of the 'launching State')에 관하여 2004년 12월 10일 결의 59/115를 통하여 우주활동의 하는 국가들은 우주조약을 비롯한 책임협약과 등록협약 상 국제의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동 결의에서 COPUOS로 하여금 회원국이 우주물체의 궤도상 소유권 이전(on-orbit transfer of ownership)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보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⁶⁵⁾

최근 준궤도(sub-orbital)를 여행하는 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상업시장이 지구에서 38만km 떨어진 달이나 약 400km 상공에서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을 다녀오는 기존의 우주관광 시장보다 궤도 접근이 용이하고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2019년 2월 22일 민간 우주탐사기업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이 처음으로 일반인 탑승객을 태우고 우주비행을 하는데 성공했다. '스페이스십 투 VSS 유니티'(Spaceship VSS Unity)라는 이름의 이 우주비행체는 음속의 3배 속도인 마하 3(시속 3,672km)의 속도로 1분간 우주로 날아가 89.8km 상공에 도달하여 몇 분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조종사와 함께 탑승한 첫 민간인 우주여행 시승객은 우주비행사 교관인 베스 모세스(Beth Moses)였다.⁶⁶⁾ 영국 우주국(United Kingdom Space Agency; UKSA)도 콘월주와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지역에 건설될 우주공항(spaceport)을 이용한 준궤도 우주비행을 위한 법규제를 마련하였다.⁶⁷⁾ 중국도 2028년 준궤도 우주여행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하고 전용 우주선을 개발 중에 있다. 이 비행체는 로켓엔진에 의해 구동되고 수직으로 발사되지만, 착륙은 수평 활주로에서 이뤄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다.⁶⁸⁾ 준궤도는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로도 여겨지는 상공 100km 상의 궤도인데, 몇몇 국가들이 이 경계선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우주의 경계획정이 아직 합의 된 바는 없다. 사실 준궤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지리적·영역적 기준(geographical/spatial criterion)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구 주변의 궤도 이르지 못한 기술적·활동적 기준(technica/operational criterion)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준궤

65) United Nations A/RES/59/115(25 January 2005).

66) 사상 최초 민간인 우주여행 시승객은 베스 모세스, *동아사이언스*, 2019.02.24.

67) 美 이어 英도 상업 우주여행 도전...'준궤도 여행' 허용법 추진-콘월 등에 유럽 첫 우주항 건설 계획도 진행 중, *매일경제*, 2019.07.01: '맛보기' 준궤도 우주여행 뜬다, *중앙일보*, 2007.02.08.

68) 중국도 우주여행 준비 박차...'2028년 준궤도여행 서비스', *매일경제*, 2018.06.20.

도 비행체의 준궤도 체류기간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준궤도 우주비행체도 등록협약 상 등록해야 하는 우주물체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등록협약 제2조 1항에서 “우주물체가 지구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되었을 때”(When a space object is launched into earth orbit or beyond)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⁹⁾ 사실 현재 준궤도여행을 다루는 항공법과 우주법은 존재하지 않는다.⁷⁰⁾

IV. 결 론

우주조약이 15개 조문, 책임협약이 28개 조문, 달협정이 21개 조문을 지닌 것에 비하면 등록협약은 12개의 조문에 불과한 조약인데, 조문수가 가장 적은 10개 조문의 구조협정보다는 2개 많다. 2020년 5월 현재 우주조약이 109개 당사국과 23개 서명국, 구조협정은 98개 당사국과 23개 서명국, 책임협약은 96개 당사국과 19개 서명국, 달협정은 18개 당사국과 11개 서명국을 가지고 있는 반면 등록협약은 69개 당사국과 3개 서명국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국 수가 우주관련 조약 중 4위를 차지한다. 등록협약은 달협정에 비하면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개발국이 참여한 조약으로서 실제적으로 구속력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주조약이 우주에 관한 근본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고, 달협정도 우주조약과 비슷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등록협약은 구조협정과 책임협약과 마찬가지로 매우 특별한 주제를 하나의 조약으로 성공시킨 법문서이다.⁷¹⁾ 그러나 등록협약은 국가들의 우주물체 의무등록을 위해 만든 조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발적인 등록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기도 하다.⁷²⁾

69) von der Dunk with Tronchetti (eds.), *op. cit.*, pp. 95-97.

70) Tanja Masson Zwaan, Current Issues & Prospects of International Space Law, 25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2010, p. 250.

71) Frans von der Dunk, The Registration Convention: Background and Historical Context, 46 *Proceedings of the Colloquium of the Law of Outer Space*, 2003, p. 450.

72) A. S. Piradov (ed.), *International Space Law*(translated from the Russian Boris Bilitsky Russian Text 1976 edition),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0, p. 154.

등록협약은 전문의 정신이 협약 실체법에서는 잘 반영되지 못한 면도 있으나 그러나 공개등록제를 설정하고 유지시킴으로써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배치할 위험성과 미확인 우주물체의 존재 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고, 장래 빈번해지는 우주물체에 관한 우주교통관리(space traffic management)에도 도움을 준 조약이다. 네덜란드의 Diederiks-Verschoor 교수는 등록협약의 기능에 관하여 첫째, 잘 정리 된 완전한 정보등록은 우주궤도에 대량살상 무기 배치의 가능성과 의심을 최소화했고, 둘째 국제등록제도 없이는 피해를 준 우주물체를 식별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⁷³⁾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제8조 및 제11조를 좀 더 상세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약이다. 그러한 면에서 우주조약이 일반법이라면 등록협약은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두 법이 충돌할 때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는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⁷⁴⁾

현재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하여 두 가지 법제도가 존재하는데,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유엔총회의 1961년 결의 1721(XV I)를 따라야 할 것이고,⁷⁵⁾ 우주조약의 당사국은 우주조약 제8조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연성법(soft law)이, 후자의 경우 경성법(hard law)이 적용되는 것이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그 자체로는 구속력은 없지만 지구궤도 또는 그 이상으로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국가로 하여금 등록을 위한 발사에 관한 정보를 유엔에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관습국제법의 규범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법 체제 모두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과 범위에 관하여 통보국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밖에 등록협약의 개정이나, 추가의정서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로 ‘우주물체’의 정의문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의 발사국 포함문제, 우주물체가 정지되어 발생한 우주폐기물의 경우에 그 책임소재문제, 우주활동의 상업화와 민영화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는 상황과 준궤도를 여행하는 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상업시장에서 그러한 우주비행체도 등록을 해야만 하는

73) Diederiks-Verschoor & Kopal, *op. cit.*, p. 44.

74) Zhao Yun, *op. cit.*, p. 114-115.

75) Zhukov & Kosolov, *op. cit.*, p. 91.

우주물체인가 하는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등록협약의 개정보다는 일반국제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약을 해석하거나 등록협약의 미비한 점을 국내법을 제정하여 보완하자는 학자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⁷⁶⁾ 등록협약이 개정에 관한 규정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정 또는 추가의정서의 제정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다.

76) Kay-Uwe Hörll and Julian Hermida, Change of Ownership, Change of Registry? Which Objects to Register, What Data to be Furnished, When, and Until When? in *Space Law* (eds., by Frans Lyall and Paul B. Larsen Ashgate), 2007, pp. 261-272.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김한택, 구조협정의 주요내용과 우주법상의 의의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2019.
 김한택,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
 회지, 제30권 2호, 2015.
 김한택, 21세기 국제우주법의 과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8호, 2003.

[외국 문헌]

- van Bogaert E. R. C, *Aspects of Space Law*,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6.
 Bourelly Michel, Is it Necessary to Re-Negotiate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30 *Proceedings of the Colloquium of the Law of Outer Space*, 1988.
 Cocca A. A,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in *I Manual on Space Law*(ed. N.
 Jasentuliyana & Roy S. K. Lee), 1979.
 Cheng Bin, *The Law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Stevens, 1962.
 Cheng Bin,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 Oxford, 1997.
 Cheng Bin, Article VI of the 1967 Space Treaty Revisite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National Activities”, and “The Appropriate State”, 26
Journal of Space Law, 1998.
 Dalfen C, Toward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the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The Gestation Process, 9 *The Ca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71.
 Diederiks-Verschoor H. Ph, Registration of Spacecraft, *New Frontiers in Space
 Law*(eds. Edward McWhinney & Martin A. Bradley), 1969.
 Diederiks-Verschoor 1. H. Ph & Kopal V,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3rd
 revised ed., Wolster Kluwer, 2008.
 von der Dunk Frans, The Registration Convention: Background and Historical
 Context, 46 *Proceedings of the Colloquium of the Law of Outer Space*,
 2003.
 von der Dunk Frans with Tronchetti Fabio(eds.), *Handbook of Space Law*,

- Edward Elga Publishing, 2015.
- Gorove Stephen, *Studies in Space Law; its Challenges and Prospects*, Leyden/Sijthoff, 1977.
- Hörl Kay-Uwe and Hermida Julian, Change of Ownership, Change of Registry? Which Objects to Register, What Data to be Furnished, When, and Until When? in *Space Law*(eds. by Lyall Frans and Larsen Paul B), Ashgate, 2007.
- Jakhu Ram S, Jasani Bhupendra, McDowell Jonathan C, Critical issues related to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and transparency of space activities, 143 *Acta Astronautica*, 2018.
- Jasentuliyana N. & Lee Roy S. K. (eds.), *Manual on Space Law*, vol. I, Oceana Publications, 1979.
- Jenks C. Wilfred, *Space Law*, Stevens, London, 1965,
- Kim Han Taek,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A Recent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11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Spring 2018.
- Kish John, *The Law of International Spaces*, Sijthoff Leiden, 1973.
- Luxenberg B. A, “Registration on Space Objects” in World Wide Space Activities Report prepared by the sub-Committee on Space Applications of th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U.S. House of Representatives, 95th Congress, 1st sess., Sept. 1977.
- Malik Sushma,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9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69.
- Masson Zwaan Tanja, Current Issues & Prospects of International Space Law, 25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2010.
- Matte N. Mateesco,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I *Annals of Air and Space Law*, 1976.
- Oduntan Gbenga,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the Airspace and Outer Space-Legal Criteria for Spatial Delimitation*, Routledge, 2011.
- Piradov A. S.(ed.), *International Space Law*(translated from the Russian Boris Bilitsky Russian Text 1976 edition),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0.

- Williams Sylvia. M, The Surprise Convention on the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28 *Zeitschrift für Luft- und Weitraumrecht*(*Germ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1979.
- Yun Zhao, Revisiting the 1975 Registration Convention: Time for Revision?, 11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4.
- Yun Zhao, A Legal Regime for Space Tourism: Creating Legal Certainty in Outer Space 74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2009.
- Zhukov Gennady and Kosolov Yuri(translated from the Russian by Belitzky Boris), *International Space Law*, Praeger, 1984.

초 록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 (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할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

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등록협약, 우주조약, 구조협정, 책임협약, 시카고협약, UNCLOS.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Registration Convention and its Future Challenges in Space Law

Han-Taek Kim*

The adoption and entering into force of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as another achievement in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corpus iuris spatialis*. It was the fourth treaty negotiated by the member states of the UNCOPUOS and it elaborates further Articles 5 and 8 of the Outer Space Treaty(OST). The Registration Convention also complements and strengthens the Article 11 of the OST, which stipulates an obligation of state parties to inform the UN Secretary-General of the nature, conduct, locations, and results of their space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prevailing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the clarification of “jurisdiction and control” as a comprehensive concept mentioned in Article 5 8 of the OST. In addition to its overriding objective, the Registration Convention also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and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public register reduces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unidentified space objects and thereby lowers the risk such as, for example, putting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ecretly into orbit. And furthermore it could serve for a better space traffic management.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a treaty established to implement Article 5 of OST for the rescue and return of astronaut in more detail. In this respect, if OST is a general law,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ould be said to be in a special law. If two laws conflict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will be applied. Countries that have not joined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ill have to follow the rules

* Professor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paragraph 7 of the Declaration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721 (XV I) in 1961. UN Resolution 1721 (XVI) is essentially non-binding, but appears to have evolved into the norm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equiring all States launching space objects into orbit or beyond to promptly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ir launchings for registration to the United Nations. However, the nature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to be supplied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notifying State.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a treaty created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by nations, but in reality it is a treaty that does not deviate from existing practice because it is based on voluntary registration.

With the situation of dealing with new problems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the space market, issue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a 'space object', including matter of the registry state of new state that purchased space objects and space debris matter caused by the suspension of space objects launched by the registry state should be considered as matters when amendments, additional protocols or new Registration Convention are established. Also the question of registration of a flight vehicle in the commercial space market using a space vehicle traveling in a sub-orbital in a short time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 Registration Convention, Outer Space Treaty, Rescue Agreement, Liability Convention, Chicago Convention, UNCLOS.